

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36,390,836	10,091,725
일반회계		271,709,940	8,151,298
특별회계		64,680,896	1,940,427
	공기업특별회계	40,084,113	1,202,52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857,513	505,72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226,600	696,798
	기타특별회계	24,596,783	737,90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7,764,913	532,94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226,783	36,803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88,316	5,64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032,900	60,987
	공업단지특별회계	7,000	210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011,774	60,35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7	2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1,319,125	39,574
	기반시설특별회계	45,915	1,377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937,537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7,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